

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2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2. 8. 29  
제 안 자 : 최광렬의원외 6인

### 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년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을 제105회 사하구의회 정례회에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# 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01 회계년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지 지출승인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유도하고 정확한 재정 수요 및 수입예측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성위원정수 : 7명
- 나. 위원선임 :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다.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: 총무위원회 3명, 사회도시위원회 4명
- 라. 활동기간 : 2001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지지출승인안(제105회 정례회)

### 4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
- 나.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